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패방지·뇌물방지정책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Policy)

ver. 1

2026 년 7 월 8 일

1. 개요

1.1 목적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부패 및 뇌물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윤리적인 사업 수행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당사의 장기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임을 인식한다.

본 정책은 부패·뇌물 행위를 비롯하여 사기, 자금세탁 등 부정행위의 방지를 포괄하며,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1.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당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대리인 등 제3자에게도 준용된다. 또한, 그룹 지주회사로서 그룹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적용원칙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부패방지·뇌물방지 관련 법령, 규제 및 기타 준수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한다. 관련 법령 또는 규제에서 정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부패·뇌물 (Corruption and Bribery)

법령 또는 사내 규정에 반하여 개인이 직무와 관련한 공정한 판단 및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부당한 이익(재무적·비재무적)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안·약속·제공·수락·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부정한 이득 (Improper Advantage)

금전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편의, 계약·인허가 취득, 규제 면제, 정보 접근권 등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지위나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한다.

다. 편의공여금 (Facilitation Payment)

공직자 또는 민간 거래 상대방이 통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소액의 금품 또는 이익을 말한다.

라. 사기 (Fraud)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마.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불법적이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의 출처, 소유 관계 또는 목적을 은폐하여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재무,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서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사. 비즈니스 관련자 (Business Associate)

현재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거나 향후 관계 수립이 예정된 외부 당사자를 말하며, 협력사, 대리인, 컨설턴트, 공급업체 등을 포함한다.

아. 공직자 등 (Public Official, etc.)

선출·지명·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하거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공기관·공기업·국제기구의 임직원 및 대리인, 정당 당직자 및 공직 후보자를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내법 적용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각급 학교·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기본원칙

가. 부패방지·뇌물방지 기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부패·뇌물을 비롯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준수한다.

① 공직자 또는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약속·제공하거나, 이를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능동적 행위(제공)와 수동적 행위(수수)를 모두 포함한다.

② 특정 비즈니스 결정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이득의 제공을 금지한다.

③ 컨설턴트·고문·공급업체 등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부패·뇌물 행위 및 부정한 이득 제공을 금지한다.

- ④ 상대방이 지정하는 가족·친지 등 제 3자에게 제공되는 부정한 이득도 뇌물로 간주하여 금지한다.
- ⑤ 편의공여금은 금액의 규모, 현지 관행 또는 사업상 필요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한다.
- ⑥ 정치 후원금, 기부금 또는 후원을 명목으로 부정한 이득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부패·뇌물 행위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당한 기부 및 후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한다.
- ⑦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거래와 회계 처리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 ⑧ 불법·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은폐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y)나 고위험 범죄 연루 조직을 통한 자금세탁 및 위장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의심거래를 철저히 식별·관리한다.

나. 금품·향응 등 허용기준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예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금품·향응의 제공 및 수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① 국내외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사회적 관습 및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며, 사회통념상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 ②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인식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③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관리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
- ④ 선물·식사·경조금 등의 구체적인 제공·수령 기준 및 가액 한도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 ⑤ 금품·향응의 제공 및 수령은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신고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한다.

다. 이해충돌 관리

- ① 임직원은 개인적·재무적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채용·인사·계약·구매·투자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족, 친지 또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임직원은 외부 활동, 겸직, 외부 직위 수임 또는 개인적 투자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신고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고된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는 적절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배제, 의사결정 제한 또는 그 밖의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라. 비즈니스 관련자 관리

- ① 당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비즈니스 관련자는 본 정책의 부패방지·뇌물방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협력사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 체결 전 동아쏘시오그룹 행동강령 전문에 대한 준수 의사를 확인하는 공급망 행동강령 준수 동의서를 징구하며, 그 수령 현황을 기록·관리한다.
- ③ 협력사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 체결 전 부패·뇌물 등 부정행위 금지 원칙에 대한 준수 의사를 확인하는 부패방지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며, 동아쏘시오그룹 제보채널(사이버감사실 CLEAN:D, 헬프라인 케이휘슬 K-Whistle) 안내를 포함한다.
- ④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뇌물방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책임 및 역할

- ①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뇌물방지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의지를 표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②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뇌물을 포함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심의·감독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부패방지·뇌물방지 등 주요 법적 리스크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이러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법지원인 및 담당 부서는 충분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부패 관련 중대한 우려사항 발생 시 이사회(또는 감사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④ 부패 및 뇌물방지 담당 부서는 정기적으로 준법경영 활동과 성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동 부서는 예상되는 법 위반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⑤ 각 부서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이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 ⑥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적절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상급자 또는 제보 채널에 보고하며, 준법경영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다.

바. 제보 및 제보자 보호

- ① 부패·뇌물 관련 위반 행위는 사이버감사실(CLEAN:D) 및 헬프라인 케이휘슬(K-Whistle)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상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 채널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 홈페이지 및 사내 포털을 통해 임직원에게 상시 공개하며, 임직원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자,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며, 선의의 제보자 및 부패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나 업무 참여를 거부한 임직원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보복, 차별,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④ 제보 내용은 엄격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 제보는 내용 확인(등록) → 조사 개시 → 조사 완료 → 종결 → 제보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종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순서로 처리한다. 이때 모든 조사는 조사를 받는 대상 부서나 인원과 완전히 독립된 인원(또는 외부 독립 기관)에 의해 기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⑥ 제보 접수 및 처리 현황, 위반 유형, 조치 결과 등은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사. 교육 및 인식 제고

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추진한다.

② 청렴·윤리경영 관련 정보와 사례를 사내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명절 기간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 및 관련 기준을 안내한다.

③ 전 임직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및 부패방지 준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④ 준법경영 이행 수준 진단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교육을 개선한다.

아. 모니터링 및 감사

① 사업 활동 전반의 부패·뇌물·사기·자금세탁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식별·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에 따라 업무 분장 및 복수결재 등의 재무적 통제와 회계, 인사 및 리스크 관리 절차와 같은 비재무적 통제 활동을 수립·이행하며, 평가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② 준법경영 내부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이해관계자 관련 부정행위 및 절차 위반 등을 점검한다.

③ 감사 범위는 부패방지·뇌물방지 정책의 준수 여부, 선물·접대 관련 내부 통제의 적절성, 이해충돌 신고 및 처리 현황, 비즈니스 관련자 부패방지·뇌물방지 준수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한다.

④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및 개선 권고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⑤ 부패방지·뇌물방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며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자. 위반 시 조치

- ①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징계,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 ②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차. 인사 및 보상 관리

- ① 임직원의 고용, 인사이동 또는 승진 시 해당 인원의 적격성, 윤리성 및 부패방지 정책 준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 전, 인사이동 전 또는 승진 전 실사(Due Diligence)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패 위험이 현저히 낮은 직무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의 성과 목표, 보너스 및 기타 인센티브 등 성과 보상 제도가 부당하게 실적을 압박하여 부패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시행 및 개정

4.1 본 정책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4.2 본 정책은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사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경영 방침 변경 또는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다.

4.3 본 정책은 동아쏘시오그룹 행동강령 및 관련 준법경영시스템과 함께 적용되며, 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